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역삼동 동훈타워 7,8,10-13,15,16층)
T 02 563 2900 E draju@draju.com www.draju.com

일 자 : 2019. 7. 4.

수 신 : 서울주택도시공사

참 조 : 송무부 강기연 부장님, 임순애 과장님

제 목 : 수입사건 수행결과 의견서

사건번호	2016가합568291	사건명	부당이득금
관 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상대방	서울특별시

저희 법무법인이 수입하여 처리하고 있는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1심 판결선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판결선고기일 : 2019. 6. 25.(송달받은 날 2019. 6. 27., 항소만기일 2019. 7. 11.)

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7,495,460원 및 그 중 247,749,546원에 대하여는 2011. 5. 14.부터, 2,229,745,914원에 대하여는 2011. 7. 9.부터 각 2013. 12.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의견

가. 재판부는 이 사건 계쟁 토지들 중 일부(제2, 5 내지 8, 12 내지 15, 22토지)에 관하여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제2, 5 내지 8, 12 내지 15, 22토지의 경우, 종래에는 그 지목이 답 또는 전이었다가 1994. 11. 23. 또는 1997. 6. 4. 경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중량구청장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지목변경 당시 위 토지 부분까지 실제 도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었거나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항소심에서 추가 입증이 가능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법인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2019. 7. 8.까지 항소 여부에 대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 태 경 [직인 생략]